



금산군의회  
GEUMSAN COUNTY COUNCIL

2024. 8. 9.(금)  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- 제3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# 의안 검토보고서

## 검토안건

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 
지방세(재산세) 감면 동의안

행정복지위원회  
전문위원 이금성

#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(재산세) 감면 동의안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72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4. 8. 7.
- 회 부 일 : 2024. 8. 7.

## 2. 제안이유

- 2024. 7. 8.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군이 ‘특별재난지역’으로 7. 25. 선포됨에 따라,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제4항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2024년 정기분 지방세(재산세)를 감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수해 피해자 지원
  - 감면대상자 :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
  - 감면물건 : 반파·전파·침수 주택(부속토지 포함) 및 건축물, 유실·매몰·침수(대파대 지원대상)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
  - 감면세목 : 2024년 정기분 재산세(지방교육세 포함)
  - 감 면 율 : 재산세 100% 감면

○ 기타

-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제4항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2024년 7월 25일 우리군이 ‘특별재난지역’으로 선포됨에 따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주택의 전파, 반파, 농지의 유실·매몰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및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,
- 그밖에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제4항 등 관련 법규 확인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